

2019회계연도 논산시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논산시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의견서

논산시장 귀하

2020년 4월 15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논산시 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9회계연도 논산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15일까지(15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9회계연도 논산시의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논산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논산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붙임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논 산 시 결 산 검 사 위 원

대표검사위원 식 丕 明 검 사 위 원 유 병 권 문 복 검 사 위 원 곾 검 사 위 원 유 여 항 검 사 위 원 우 옂 식

목 차

I. 검사 기본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	1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4
1. 논산시 재정의 개황	5
2. 세입·세출 결산 ······	7
3. 기금 결산	17
4. 재무제표의 결산	19
5. 성과보고서	21
6. 결산서의 첨부서류의 결산	23
Ⅲ. 개선 및 권고사항	25

I. 검사 기본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

1.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증빙 자료 대조, 현지확인, 금고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제반 검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2. 결산검사기간 : 2020. 4. 1. ~ 4. 15.(15일간)

3.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	위원	조 배 식	세입, 세출결산 총괄	논산시의회 의원
위	원	윤 병 권	세입전반, 기금, 채권, 채무	전직 공무원
위	원	문 관 복	성과보고서, 특별회계, 공유재산, 물품	전직 공무원
위	원	윤 여 힝	세출전반, 예산이용·전용, 예비비	전직 공무원
위	원	우 영 식	재무제표 전반, 건의·수범사례	세 무 사

4. 중점검사내용

가. 세입 분야

- 1)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 여부
- 2) 과세관련자료 적정 여부

- 3) 체납액 정리 및 적법 결손처분의 여부
- 4) 효율적인 자금 관리여부 및 운용 실태

나. 세출 분야

- 1) 세출예산의 적법편성 및 집행, 결산의 정확성 여부
- 2) 이월 예산 및 예산 이용, 전용의 적정 여부
- 3) 불용액에 대한 타당성 검사

다. 기금 결산

1) 기금 관리 운영의 적정성 여부

라. 재무제표

- 1) 재무제표 검토인의 적격성 및 검토절차의 적정성 확인 여부
- 2)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의 수정방안 및 개선 대안 제시 확인

마. 성과보고서

- 1) 성과관리 체계의 적합성, 성과지표 타당성, 측정방법 적합성, 목표치의 적정성 확인
- 2) 성과실적의 신뢰성, 실적치의 적합성, 실적치 측정 타당성 확인

바. 채권, 채무 관리

- 1) 채권·채무 관리의 적정 여부
- 2) 채무 변제의 이행 실태

사. 재산 및 기금, 물품 관리

- 1) 공유재산 관리 실태 및 대장 등재 여부
- 2) 정수 물품 관리 실태 및 현재액보고서와 일치 여부

아. 금고의 결산

- 1) 세입·세출회계별 결산액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 여부
- 2) 수입계산서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납액 결산금액과의 상호 부합 여부

위 내용 외에 시정 또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별도 후술하였습니다.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논산시 재정의 개황

가.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	이	601,797,951	690,982,476	786,531,404	860,041,155	1,004,905,013
일반회계	세	출	514,601,166	554,035,327	615,515,204	634,571,900	823,961,328
	결산상잉여금		87,196,785	136,947,149	171,016,200	225,469,256	180,943,685
	세	입	115,369,971	141,413,227	149,042,114	136,560,198	162,904,469
특별회계	세	초	72,205,686	100,037,973	98,553,989	72,372,979	89,170,299
	결산상잉이	금	43,164,285	41,375,254	50,488,125	64,187,219	73,734,170
	세입(수입)		717,167,922	832,395,703	935,573,518	996,601,353	1,167,809,482
총 계	세출(지	출)	586,806,852	654,073,300	714,069,193	706,944,879	913,131,627
	결산상잉이	洁	130,361,070	178,322,403	221,504,325	289,656,475	254,677,855

최근 5년간 평균 세입은 13%, 세출은 11.7%, 잉여금은 18.2%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세입결산액은 17.2%(171,208,129천원) 증가, 세출결산액은 29.2%(206,186,748천원) 증가, 결산상잉여금은 12.1%(34,978,620천원) 감소하였음.

세출결산액을 2019.12.31.기준 주민수 122,928명으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7,428천원임.

논산시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3,109,600	43,165,000	0	0	0
지 병	방 채	0	0	0	0	0
차 약	입 금	43,109,600	43,165,000	0	0	0
채무부	·담행위	0	0	0	0	0

논산시 채무는 2016년에 43,165,000천원을 상환하였고 최근 3년간 차입한 사실이 없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0원임.

2. 세입·세출 결산

가. 총 괄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C=A-B)
합 계	1,147,805,685	1,167,809,482	913,131,627	254,677,855
일반회계	989,097,916	1,004,905,013	823,961,328	180,943,685
특별회계	158,707,769	162,904,469	89,170,299	73,734,170
공기업	121,382,117	125,199,060	74,852,532	50,346,528
기 타	37,325,652	37,705,409	14,317,767	23,387,642

_1 _1		결산상 잉여금 명세			
회계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합 계	77,438,004	32,733,392	44,144,726	9,755,550	90,606,183
일반회계	75,581,281	31,714,377	15,323,886	7,672,819	50,651,322
특별회계	1,856,723	1,019,015	28,820,840	2,082,731	39,954,861
공기업	1,708,723	918,036	28,820,840	2,046,159	16,852,770
기 타	148,000	100,980	0	36,572	23,102,090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67,809,482천원으로 예산현액 1,147,805,685천원보다 20,003,797천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8.2%인 913,131,627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54,677,855천원임.

이중 명시이월비 77,438,004천원, 사고이월비 32,733,392천원 및 계속비 44,144,726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755,550천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0,606,183천원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 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90,606,183천원임이 확인되었음.

나. 일 반 회 계

1) 세 입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결 신	<u>-</u> 액	989,097,916	1,022,105,491	1,004,905,013	1,306,256	15,894,222
결산획	인액	989,097,916	1,022,105,491	1,004,905,013	1,306,256	15,894,222
차	액	0	0	0	0	0

수납액 1,004,905,013천원은 예산현액의 101.6%로서 15,807,097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3%이며, 불납결손액은 1,306,256천원임.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004,905,013	1,004,905,013	0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수납율
2019	989,097,916	1,022,105,491	1,004,905,013	1,306,256	15,894,222	98.3%
2018	848,587,472	877,315,199	860,041,155	1,964,515	15,309,529	98.0%
증 감	140,510,444	144,790,292	144,863,858	△658,259	584,693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재원병	盟	구 も	7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	계		989,097,916	1,022,105,491	1,004,905,013	1,306,256	15,894,222
	소		계	86,746,751	110,290,558	93,090,080	1,306,256	15,894,222
자체 수입	지	방	세	59,439,000	66,405,434	60,215,220	983,308	5,206,906
	세의	리 수	이	27,307,751	43,885,124	32,874,860	322,948	10,687,316
	소		계	668,357,614	678,899,308	678,899,308	0	0
이전	지빙	교투	브세	382,748,000	393,555,601	393,555,601	0	0
수입	조정	교부급	그등	25,925,000	25,925,881	25,925,881	0	0
	보	조	그ㅁ	259,684,614	259,417,826	259,417,826	0	0
보 전 및	선 수 내 ^트	-	능래	233,993,551	232,915,625	232,915,625	0	0

○ 세입결산 개요

- · 수납액은 전년도 860,041,155천원보다 144,863,858천원이 많은 1,004,905,013천원이 수납되어 16.8% 증가
- ·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1,964,515천원보다 658,259천원 감소한 1,306,256천원이며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704,003천원, 평가액 부족 412,463천원, 시효소멸 366,929천원 등 임
- ·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5.2%인 60,215,220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32,874,860천원, 지방교부세는 33.7%인 393,555,601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25,925,881천원, 보조금은 259,417,826천원 수납

2) 세 출

일반회계 세출 결산 확인

(단위: 천원)

회계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액
결 산 액	840,950,619	989,097,916	823,961,328	122,619,544	42,517,044
결산확인액	840,950,619	989,097,916	823,961,328	122,619,544	42,517,044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 예산액은 840,950,619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48,147,297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989,097,916천원임
- · 세출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음
- · 이체는 예산현액의 1.7%인 17,249,075천원으로서 업무이관과 조직 개편 등에 기인함
- · 예비비 예산액은 5,742,678천원으로서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등 지원 외 8건 625,971천원을 지출결정하여 413,598천원을 지출하였음
-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3%에 해당하는 823,961,328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22,619,544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75,581,281천원, 사고이월액은 31,714,377천원, 계속비이월액은 15,323,886천원 임
-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3%에 해당하는 42,517,044천원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823,961,328	823,961,328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_	_	2018회계연도	202	19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u> </u>	과 목		집 행 액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율	급액	비 율
함	· 계		634,571,900	989,097,916	823,961,328	83.3	189,389,428	29.8
일 반	공 공 행	정	35,502,809	120,674,840	107,998,789	89.5	72,495,980	204.2
공공족	밀서및인	·전	2,457,831	4,704,471	3,162,456	67.2	704,625	28.7
교		육	15,066,981	15,927,532	13,159,420	82.6	△1,907,561	△12.7
문 화	및 관	광	20,567,742	41,925,574	25,898,239	61.8	5,330,497	25.9
환 7	병 보	호	44,144,257	59,670,274	52,474,992	87.9	8,330,735	18.9
사 호	회 복	지	174,062,583	212,664,995	207,814,770	97.7	33,752,187	19.4
보		건	18,677,681	25,406,139	23,619,610	93.0	4,941,929	26.5
농 림	해 양 수	산	105,499,355	135,003,539	116,527,162	86.3	11,027,807	10.5
산업	· 중소기	업	5,695,781	13,216,254	9,284,214	70.2	3,588,433	63.0
수 송	및 교	통	42,675,293	88,982,900	60,892,220	68.4	18,216,927	42.7
국토딩	및지역개	발	78,879,283	167,686,749	108,260,334	64.6	29,381,051	37.2
예	別	비	0	5,105,740	0	0	0	0
기		타	91,342,304	98,128,909	94,869,122	96.7	3,526,818	3.9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207,814,770천원, 농림해양수산 116,527,162천원, 국토및지역개발 108,260,334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204.2%), 산업·중소기업 (63%), 수송 및 교통(42.7%) 등 임.

다. 특 별 회 계 1)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58,707,769	164,848,775	162,904,469	240,614	1,703,692
공기 업 특 별 회 계	121,382,117	125,772,118	125,199,060	0	573,058
상 수 도	46,319,919	49,551,942	49,107,059	0	444,883
하 수 도	75,062,198	76,220,176	76,092,001	0	128,175
기타특별회계	37,325,652	39,076,657	37,705,409	240,614	1,130,634
새 마 을 주 민 소 득 지 원 기 금	453,783	454,925	454,925	0	0
의 료 급 여	3,165,783	3,885,153	3,263,705	240,614	380,83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 활 안 정 기 금	823,855	829,197	810,351	0	18,846
수 질 개 선	1,190,541	1,192,202	1,192,202	0	0
농 공 단 지	902,626	905,611	905,611	0	0
논산시일반산업 단지조성사업	14,143	14,214	14,214	0	0
기반시설부담금	152,447	152,406	152,406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970,122	1,974,904	1,974,904	0	0
주택자금융자기금	28,792	29,435	28,935	0	500
주 택 사 업	859,838	867,937	820,877	0	47,060
주 차 장 관 리	16,153,625	16,777,856	16,204,554	0	573,302
토 지 관 리	410,097	787,117	677,025	0	110,092
도 시 재 생	11,200,000	11,205,700	11,205,700	0	0
결 산 확 인 액	158,707,769	164,848,775	162,904,469	240,614	1,703,692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 · 수납액 162,904,469천원은 예산현액의 102.6%로서 4,196,700천원이 초과수납
- ·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8%로서 전년도에 비해 0.1% 증가하였음
- ・불납결손액은 240,614천원으로서 시효소멸에 기인하였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62,904,469	162,904,469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다.

2)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회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 액
<u> </u> 한	계		106,836,270	158,707,769	89,170,299	31,696,578	37,840,892
공기 업 특	- 별 회	계	73,886,206	121,382,117	74,852,532	31,447,598	15,081,987
상	수	도	39,559,742	46,319,919	39,422,742	5,143,151	1,754,026
하	수	도	34,326,464	75,062,198	35,429,790	26,304,447	13,327,961
기타특	별 회	계	32,950,064	37,325,652	14,317,767	248,980	22,758,905
	을 주 원기	민급	453,783	453,783	0	0	453,783
의 료	급	여	3,165,783	3,165,783	3,014,498	0	151,285
국민기초 생 활 인	생활수 · 정 기	급자 금	823,855	823,855	0	0	823,855
수 질	개	선	1,181,691	1,190,541	868,262	148,000	174,279
농 공	단	지	159,626	902,626	580,245	0	322,381
논산시 단 지 <i>조</i>			14,143	14,143	0	0	14,143
기반시	설부딤	ł 금	152,447	152,447	0	0	152,447
장기미 계획시설			1,970,122	1,970,122	20,705	0	1,949,417
주택자금	₽ ₽ ₽ ₽ ₽ ₽ ₽	기금	28,792	28,792	0	0	28,792
주 택	사	업	859,838	859,838	138,916	0	720,922
주 차	장 관	리	12,529,887	16,153,625	1,676,494	100,980	14,376,151
토 지	관	리	410,097	410,097	114,323	0	295,774
도 시	재	생	11,200,000	11,200,000	7,904,324	0	3,295,676
결 산 획	- 인	액	106,836,270	158,707,769	89,170,299	31,696,578	37,840,892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 예산액은 106,836,270천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1,871,499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8,707,769천원이었고, 세출예산 이용, 전용은 없음
- · 이체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500,000천원으로 직제개편에 기인함
-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6.2%에 해당하는 89,170,299천원이며, 이월액은 공기업특별회계 31,447,598천원, 기타특별회계 248,980천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3.8%에 해당하는 37,840,892천원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89,170,299	89,170,299	0

각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다.

라.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단위 : 천원)

_											- '' ' ' ' ' ' '
١.	회계별		이월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이월		
			멷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7	합		계	316	154,316,122	162	77,438,004	129	32,733,392	25	44,144,726
,	일	반호	계	289	122,619,544	157	75,581,281	123	31,714,377	9	15,323,886
	특	별호	계	27	31,696,578	5	1,856,723	6	1,019,016	16	28,820,840
		공7	기업	25	31,447,598	4	1,708,723	5	918,036	16	28,820,840
		기	타	2	248,980	1	148,000	1	100,980	0	0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검사결과 결산액과 일치하였다.

3. 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 금 현 황

- 4	전년도말	딩	하연도 증감약	4	당해연도말
구 분	조 성 액	증가 또는 감 소 액	조성 액	사 용 액	조 성 액
합 계	9,800,162	57,962,984	58,751,172	788,188	67,763,146
자 활 기 금	765,053	2,079	91,879	89,800	767,133
노 인 복 지 기 금	1,118,262	△2,395	17,605	20,000	1,115,867
양 성 평 등 기 금	1,031,981	△13,974	16,026	30,000	1,018,007
문화예술진흥기금	1,062,714	△2,094	27,906	30,000	1,060,620
체 육 진 흥 기 금	1,041,438	△11,261	16,739	28,000	1,030,176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72,475	△65,647	110,088	175,735	6,828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800,000	0	0	0	800,000
재 난 관 리 기 금	3,360,701	344,027	749,680	405,653	3,704,728
옥외광고발전기금	256,990	11,792	11,792	0	268,782
식 품 진 흥 기 금	290,548	△954	8,046	9,000	289,594
농 업 발 전 기 금	0	1,000,000	1,000,000	0	1,000,000
재 정 안 정 화 기 금	0	56,701,411	56,701,411	0	56,701,411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사용액 불부합분(32,648천원) 정정금액 임.

2019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9,800,162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58,751,172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788,188천원을 공제한 67,763,146천원임.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 평균 중 가 율
전년도말 조성액	8,238	8,545	8,311	9,378	9,800	4.4
당해연도 조성액	1,045	3,658	4,833	1,178	58,751	173.8
당해연도 사용액	739	3,892	3,737	756	788	1.6
당해연도말 조성액	8,545	8,311	9,407	9,800	67,763	67.8

논산시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67.8%p 증가하였고, 검사결과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67,763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57,96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본년도 기금의 지출액은 788백만원임.

4. 재무제표의 결산

2019회계연도 논산시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8	2019	전년 대비	중감
	正	2010 2013		금 액	비 율
자	산	3,303,117,165	3,460,947,376	157,830,211	4.8
1. 유 등	동 자 산	341,284,401	365,247,541	23,963,140	7.0
II. 투 기	자 자 산	7,050,133	7,587,927	537,794	7.6
Ⅲ. 일 반	유 형 자 산	139,753,962	151,502,073	11,748,111	8.4
Ⅳ. 주 민	편 의 시 설	292,632,559	351,960,533	59,327,974	20.3
V. 사회	기 반 시 설	2,519,212,001	2,581,371,859	62,159,858	2.5
Ⅵ. 기타	비유동자산	3,184,109	3,277,443	93,334	2.9
부	채	47,355,973	41,782,572	(-)5,573,401	(-)11.8
1. 유 등	동 부 채	10,769,962	11,616,307	846,345	7.9
II. 장기	차 입 부 채	0	0	0	0
Ⅲ. 기타비	비유동부채	36,586,011	30,166,265	(-)6,419,746	(-)17.5
순 :	자 산	3,255,761,191	3,419,164,804	163,403,613	5.0
I. 고 정	순 자 산	2,871,439,637	2,991,144,374	119,704,737	4.2
Ⅱ. 특 정	순 자 산	0	0	0	0
Ⅲ. 일 반	순 자 산	384,321,554	428,020,430	43,698,876	11.4

2019회계연도 말 논산시의 자산은 3,460,947,376천원으로 전년도의 3,303,117,165천원보다 157,830,211천원(4.8%) 증가하였고, 부채는 41,782,572천원으로 전년도의 47,355,973천원보다 5,573,401천원 감소하였음.

2019회계연도 자산의 총계에서 부채의 총계를 차감한 논산시의 순자산은 3,419,164,804천원이며 전년도의 3,255,761,191천원보다 163,403,613천원이 증가하였음.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8	2019	전년대비 즉	증감
구 분 	2016	2019	금 액	비 율
1. 인건비	106,700,996	110,332,654	3,631,658	3.4
Ⅱ. 운영비	192,007,455	225,046,275	33,038,820	17.2
Ⅲ. 정부간이전비용	12,080,981	18,067,847	5,986,866	49.6
N. 민간등이전비용	229,564,987	258,837,399	29,272,412	12.8
V. 기타비용	45,336,172	50,166,558	4,830,386	10.7
VI. 비용총계(B)	585,690,591	662,450,733	76,760,142	13.1
VII. 자체조달수익	107,999,971	118,411,161	10,411,190	9.6
VⅢ. 정부간이전수익	588,686,878	671,797,656	83,110,778	14.1
IX. 기타수익	9,122,856	7,887,825	(-)1,235,031	(-)13.5
X. 수익총계(A)	705,809,705	798,096,642	92,286,937	13.1
XI. 재정운영결과 (B-A)	(-)120,119,114	(-)135,645,909	(-)15,526,795	12.9

2019회계연도의 논산시의 총비용은 662,450,733천원이며 총수익은 798,096,642천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 (-)135,645,909 천원이 발생하였고,

2019년에 논산시의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92,286,937천원이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76,760,142천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 전년보다 (-)15,526,795천원이 감소하였음.

5. 성과보고서

논산시에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9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정책/	사업목표	성과지	표 목표달성	여부
구 분	전략목표수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 (B/A)
합 계	12	83	182	167	15	91.8
의회사무국	1	1	2	2	0	100
전략기획실	1	2	4	4	0	100
참여예산실	1	2	5	5	0	100
청렴감사실	1	1	3	2	1	66.7
열린홍보실	1	1	5	5	0	100
도 시 계 획 상임기획단	1	1	2	2	0	100
친절행정국	1	14	28	26	2	92.9
동고동락국	1	20	45	39	6	86.7
행복도시국	1	26	48	44	4	91.7
미 래 발 전 사 업 단	1	4	6	5	1	83.3
직 속 기 관	1	6	23	22	1	95.7
사 업 소	1	5	11	11	0	100

논산시에서는 본 회계연도의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2개)-정책사업목표(83개)-단위사업(18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논산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182개의 지표수 중 167개의 성과지표를 초과달성 및 달성하여 91.8%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15개의 성과지표를 미달성하였음.

6. 결산서의 첨부서류의 결산

가. 채 권

채 권 현황

(단위 : 천원)

회계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상 환 소 멸 액	당해 연 도 말 현 재 액
합계	7,000,270	576,077	1,232,054	6,344,293
일반회계	6,895,790	540,577	1,231,077	6,205,290
특별회계	24,480	500	977	24,003
기 금	80,000	35,000	0	115,000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344,293천원으로 확인되었다.

나. 채 무

채 무 현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상 환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기 금	0	0	0	0

검사결과 채무는 0원으로 확인되었다.

다.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말	당해 연	당해 연도 증감			
용	도	현 재 액	증	감	현 재 액		
	합계	1,389,999,865	127,737,997	8,209,131	1,509,528,731		
	소 계	1,360,756,014	127,558,918	6,584,712	1,481,730,220		
행	공용재산	277,845,794	38,796,113	2,338,788	314,303,119		
정 재	공공용재산	1,075,479,981	88,762,805	3,951,009	1,160,291,777		
 산	기업용재산	788,440	0	0	788,440		
	보존용재산	6,641,799	0	294,915	6,346,884		
Ç	빌 반 재 산	29,243,851	179,079	1,624,419	27,798,511		

[※]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오류 입력 재산(440,585,116천원) 정정금액 임.

라. 물품

본 년도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총괄

구 분	2018년도말	당해 연	2019년도말	
T T	보 유 현 황	취 득	득 처분 보유	
수 량	1,168	160	108	1,220
금 액	10,283,823	1,312,159	587,637	11,008,345

Ⅲ. 개선 및 권고사항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목록

연번	제 목	개선 및 권고사항	관 련 부 서
1	세입예산 계상 부적정	예산을 계상 후 징수 결정을 하지 않거나, 소액만 계상 후 실제 수입액을 징수 결정, 예산 계상 없이 징수 결정만 하는 등 세입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해 수입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해 사장시키거나 예산규모를 축소시킴.	파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2	특별회계 세입예산 계상 부적정	의료급여 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 경우, 2018년도 결산상 상당한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수납시기가 정확해질 때까지 세입예산에 미반영하거나 매년 관행적으로 일부 금액만 세입예산에 계상하므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에 상당한 괴리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특별 회계 예산규모의 축소로 이어지게 됨.	민 원 토 지 과 주민생활지원과 도 시 재 생 과 (도시정책과) 도 로 교 통 과 (시민교통과)
3	세입금 결손 처분 부적정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은 구상금 체납액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으나, 매월 대상자에게 납부 안내와 함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시효소멸 중단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송,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 등의 적극적 절차이행이 결여 됨.	주민생활지원과

연번	제 목	개선 및 권고사항	관 련 부 서
4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시 예산 정리 철저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 예산에 계상된 후에 변경 교부결정되면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예산액 증·감을 반영하여야 하나, 간주처리예산 편성까지도 이행하지 않아, 예산액과 실제수령액이 불일치함.	마을자치분권과 사회적경제과 농업정책과 산림공원과 도로교통과 (시민교통과) 농업기술센터
5	국·도비사업 집행 철저	매년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2017년 8,263,656천원, 2018년 8,414,428천원, 2019년 9,755,549천원으로 반환금이 증가추세에 있어 많은 노력을통해 확보한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하고 있음.	전 부 서
6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 과다 발생	행정지원과 외 13개 부서에서는 총 30건에 2,859,507천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전액 불용 처리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	 한 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7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개선	2019회계연도에 편성된 많은 사업을 지연 발주함으로써 연내에 사업비 집행을 완료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154,316,122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금은 해마다 반복 발생 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전 부 서

연번	제 목	개선 및 권고사항	관 련 부 서
8	이월액 과다 부서에 대한 해소 대책 미흡	일반회계 시전체 예산액 대비 이월액 현황을 보면 2017년도는 17.8%, 2018년에는 20.4%, 2019년에는 14.6%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고, 특히, 이월예산 규모가 큰 4개 부서의 예산액 대비 평균 이월액 현황은 2017년도의 경우 34.6%, 2018년도는 52.1%, 2019년은 48.9%로 예산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있음.	관 광 체 육 과 사회적경제과 도로교 통 과 (안전도로과) 미 래 사 업 과
9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부적정	사업기간 부족 및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연도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 연찬 부족으로 사고이월 처리 하였음.	참 여 예 산 실 환 경 과 평 생 교 육 과 농 업 정 책 과 축 산 자 원 과
10	미개최 지역축제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축제추진을 위해 사전준비와 홍보 등에 최선을 다했으나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됨에 따라 막대한 재정손실은 물론, 상인들도판매 수입 급감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에서 대도시 판촉행사를 추진한 바 있으나, 판매 실적이 저조하고 기대효과도 미미한 실정임.	문 화 예 술 과 산 림 공 원 과
11	예비비사용 지출 제한 준수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사안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다음연도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는 예비비의 지출제한을 예규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예비비지출의 내재적 한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산 림 공 원 과 도 로 교 통 과 (안전도로과)

연번	제 목 개선 및 권고사항 관 련 부 서					
1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등기타 경비는 세입 세출외현금으로 구분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맑은물과 외 2개소에서는 경비 상호간 구분 없이 관리하고 있거나, 2018년도말 현재액과 2019년도 결산서상 현재액이 불일치함.	회 계 과 맑 은 물 과 보 건 소 연 무 읍			
13	공유재산 관리 체계 개선	맑은물과 공기업특별회계 취득재산 12건 중 4건의 취득 가격이 오류 입력되어 2019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전년대비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괄재산관리관은 수기로 입력된 상세내역(취득재산가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승인만 하고 있는 실정임.	회 계 과 맑 은 물 과			
14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 시유 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 결과, 4개소에서 무단점유 중이거나 나대지로 방치 중에 있음.	회 계 과			
15	정수관리대상 물품 정수관리 철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물품현황에 의하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59개 품목 중무정전전원장치는 2019년도말 보유수량이 정수보다 9개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는 2018년도말 보유수량이 정수보다 2개 초과하여 보유하였거나보유하고 있음.	회 계 과			
16	논산시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 (위탁운영) 실시 협약서 개선 권고	위탁대가(시설개선비, 운영관리비) 산출시 초기에는 직전 5년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다 2013년부터 연3%의 물가변동분을 적용하여 위탁대가를 산정하였는데, 실제 물가 상승률은 2013년을 기점으로 1%대로 하락한 현상을 보여주므로 연3%의 적용은 수자원공사에 유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맑 은 물 과			

연번	제 목	개선 및 권고사항	관 련 부 서
		현재 협약서상 경상적용할인율 연5.25%는 협약종료일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을 도외시 한 것이며, 일반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역할에도 맞지 않음.	
17	특별회계 운영 재검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는 현황과 같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을 확보하였으나 운영한 실적이 없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무관리비 등 일부만 집행하여 운영 실적이 극히 적음.	마을자치분권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과 (도시정책과)
18	특별회계 설치 존속기한 명시 필요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존속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주민생활지원과 도 시 재 생 과 (도시정책과)
19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개선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분석해보면 실제수납액에 비하여 과소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음.	민 원 토 지 과
20	성과보고서 성과분석 미흡	2019년도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초과달성 28건(200%이상 8건), 미달성 15건(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이 없는 지표 8건) 으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대체적 으로 미흡하거나 없는 실정임.	참 여 예 산 실
21	성과보고서의 사업성과 목표 설정 부적정	18년도에 초과달성 지표에 대하여 19년도 목표치를 동일하거나 하향조정되어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없을 정도로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18년도에 미달성 지표에 대하여 19년도 목표치를 동일하거나 상향 조정되어 달성자체가 어려운 무리한 목표치를 설정함은 성과의 신뢰성과 적정성이 없음.	참 여 예 산 실

1. 세입예산 계상 부적정

□ 현 황

	세입과목		전년도	예 산	징 수		수납액		불 납	미수
부서별	항 목	예산액	이월액	해 전 현 액	결정액	수 납 총 액	환급액	실 제 수납액	결손액	납액
힙	· 계	5,173,112	0	5,173,112	22,703,034	9,582,242	363,105	9,219,137	1,153,008	12,330,889
행 정 지원과	그외수입	750,238	0	750,238	378,067	378,067	0	378,067	0	0
세무과	지난연도 수 입	1,200,000	0	1,200,000	4,480,457	1,813,596	362,540	1,451,056	836,183	2,193,218
M T 44	민간용자금 회수수입	391,840	0	391,840	0	0	0	0	0	0
민 원 토지과	지난연도 수 입	9,876	0	9,876	868,519	10,488	0	10,488	0	858,031
마을자치 분 권 과	기타회계 전 입 금	453,783	0	453,783	0	0	0	0	0	0
100세 행복과	과 징 금	0	0	0	42,036	0	0	0	0	42,036
주민생활 지원과	그외수입	121,000	0	121,000	217,711	217,711	0	217,711	0	0
	과 징 금	0	0	0	21,750	21,750	0	21,750	0	0
사 회	과 태 료	39,800	0	39,800	87,132	70,870	103	70,767	0	16,365
복지과	그외수입	1,200,000	0	1,200,000	1,460,471	1,460,393	0	1,460,393	0	78
	지난연도 수 입	11,532	0	11,532	79,860	9,506	0	9,506	0	70,354
관 광	기타사용료	12,730	0	12,730	0	0	0	0	0	0
체육과	그외수입	250,895	0	250,895	484,292	484,240	0	484,240	0	52
농 업 정책과	지난연도 수 입	0	0	0	6,278	0	0	0	0	6,278
축 산	공유재산 임 대 료	0	0	0	1,563	1,563	0	1,563	0	0
자원과	지난연도 수 입	0	0	0	4,193	0	0	0	0	4,193
산 림 공원과	지난연도 수 입	0	0	0	316,313	0	0	0	0	316,313
	그외수입	20,000	0	20,000	4,114,915	4,114,915	0	4,114,915	0	0
도 시 재생과	지난연도 수 입	30,000	0	30,000	470,155	34,928	0	34,928	0	435,227
	기타회계 전 입 금	28,792	0	28,792	0	0	0	0	0	0

אי ני ע	세입과목	וגה בי וני.				수납액			미수	
부서별	항 목	예산액			결정액		환급액	실 제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납 액
도 로	과 태 료	166,400	0	166,400	587,514	192,318	377	191,941	0	395,573
교통과	지난연도 수 입	390,005	0	390,005	5,035,182	404,224	85	404,139	316,825	4,314,218
원 스 톱	징수교부금 수 입	60,000	0	60,000	330,025	330,025	0	330,025	0	0
허가 과	지난연도 수 입	36,221	0	36,221	887,308	37,648	0	37,648	0	849,660
맑 은 물 과	지난연도 수 입	0	0	0	2,829,293	0	0	0	0	2,829,293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 위 현황과 같이 예산을 계상 후 징수 결정을 하지 않거나, 소액만 계상 후 실제 수입액을 징수 결정하는 사례, 예산 계상 없이 징수 결정만 하는 사례 등 세입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해 수입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해 사장시키거나 예산규모를 축소 시키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수입이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특히, 누락 규모가 큰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전년도 결산서에 규모가 표기되어 있어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종의 채권에 해당되므로 누락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 차액 발생 사유가 대부분 관심부족에서 비롯된 사례로 판단되므로, 총괄 세입부서에서 각 부서별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최종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수입을 제외한 제반 수입은 최종 추경 편성 시 현실에 맞게 증·감 정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회계 세입예산 계상 부적정

□ 현 황

(단위: 천원)

		2018회계인	년도 결산		2019회계연도 결산				
회계별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1,809,147 (1,187,889)	583,165 (162,646)	222 (222)	1,225,760 (1,025,021)	315,900 (124,800)	2,046,704 (1,323,204)	700,654 (283,078)	240,614 (240,614)	1,105,436 (799,512)
의료급여	615,459 (545,848)	62,360 (29,127)		553,099 (516,721)	26,800 (26,800)	781,421 (553,099)	161,373 (152,003)	240,614 (240,614)	379,434 (160,482)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생활안정 기 금	6,079 (6,079)	1,173 (1,173)		4,906 (4,906)	1,000 (1,000)	4,906 (4,906)	228 (228)		4,678 (4,678)
주택사업	41,623 (36,926)	9,591 (4,894)		32,032 (32,032)	35,000 (30,000)	40,714 (40,714)	2,784 (2,784)		37,930 (37,930)
주 차 장 관 리	617,116 (473,854)	153,734 (53,530)	222 (222)	463,160 (420,102)	146,100 (60,000)	741,016 (563,317)	167,714 (36,227)		573,302 (527,090)
토지관리	528,870 (125,182)	356,307 (73,922)		172,563 (51,260)	107,000 (7,000)	478,647 (161,168)	368,555 (91,836)		110,092 (69,332)

※ ()는 지난연도 수입임

□ 문제점

○ 의료급여 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 경우, 2018년도 결산상 상당한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수납시기가 정확해질 때까지 세입예산에 미반영하거나 매년 관행적으로 일부 금액만 세입예산에 계상하므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에 상당한 괴리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축소로 이어지게 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미수납액이 과다한 경우, 특별회계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아울러, 미수납액이 지방세가 아닌 일반 채권인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가 아닌 지방 재정법을 적용함에 따라 압류 및 결손처분 절차가 까다로워 처분이 미흡한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112조 및 122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 등 채권 보전 조치와 함께 시효소멸, 청산절차 이행 등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미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세입금 결손 처분 부적정

□ 현 황

(단위 : 천원)

				사 유 별					
회계별	구 분	인원	불 납 결손액	배분 금액 부족	체납 처분 중지	시효 소멸	행방 불명	무재산	기타
	합 계	48	240,613			240,613			
의료급여 특별회계	부당이득금	28	153,848			153,848			
	구 상 금	20	86,765			86,765			

□ 문제점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은 부당이득금과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은 구상금 체납액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논산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효소멸을 이유로 결손 처분을 실시하였는바,
- 그동안 결산검사 시마다 누적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권고한 바 있어 징수 불능 체납액을 결손 처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매월 대상자에게 납부 안내와 함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시효소멸 중단 효력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소송,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 등의 적극적절차이행이 결여된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고 이로 인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처분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금후 체납된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에 대하여는 대상자에 대한 자동차 및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소송,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시효소멸이 완성되지 않도록 하시고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기타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방안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4.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시 예신액 정리 철저

□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과 실제수령액 불일치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세 부 사 업 명	재 원	예산액 (A)	수령액 (B)	차 액 (B-A)	비고
마을자치분권과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도비	11,030	13,000	1,970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비	89,000	81,436	-7,564	
	사업	도비	26,700	24,432	-2,268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국비	60,400	26,183.43	-34,216.57	
	사업개발미 시천사업	도비	7,760	3,366.44	-4,393.56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 육성	국비	50,000	25,000	-25,000	
	『『	도비	15,000	7,500	-7,500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국가직접지원)	도비	3,720	0	-3,720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국가직접지원)	도비	63,000	42,840	-20,160	
	농촌자원복합	국비	100,000	0	-100,000	
농 업 정 책 과	산업화지원(창업)	도비	18,000	0	-18,000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도비	5,400	2,700	-2,700	
	산불방지 교육훈련	국비	3,660	0	-3,660	
산림공원과	및 조사	도비	1,647	0	-1,647	
	헬기임차(보조)	도비	26,000	0	-26,000	
도로교통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국비	42,600	36,400	-6,200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국비	국비	258,900	252,000	-6,900	

□ 문제점

-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 예산에 계상된 후에 변경 교부결정 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액 중·감을 반영하여야 하나 간주처리 예산 편성까지도 이행하지 않아, 위 현황과 같이 예산액과 실제수령액이 불일치하고 있음.
- 보조금 수령액보다 예산액을 초과 편성할 경우 초과 지출의 위험이 있고, 예산액을 적게 편성할 경우 실제수령액과의 차액만큼 지출하지 못하고 그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정한 예산 운용을 한 것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는 전부서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교부 될 경우에는 당해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국·도비사업 집행 철저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현황

(단위: 천원, %)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중 감 율	
구분	(A)	(B)	(C)	B/A	C/B
합 계	8,263,656	8,414,428	9,755,549	1.8	15.9
국 비	6,032,387	5,565,580	6,227,171	-7.7	11.9
도 비	2,231,269	2,848,848	3,528,378	27.7	23.9

□ 문제점

○ 매년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위 현황과 같이 2017년 8,263,656천원, 2018년 8,414,428천원, 2019년 9,755,549천원으로 반환금이 증가추세에 있어 많은 노력을 통해 확보한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사업 신청단계에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 과다 발생

□ 현 황

(단위 : 천원)

부 서	세 부 사 업	통계 목	예산현액	불용액
합 계	30건		2,859,507	2,859,507
	서무관리 및 행정지원	기타보상금	12,000	12,000
행정지원과	시정 및 시책 업무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0	1,000,000
	인력운영비(행정지원과)	기타직보수	100,000	100,000
마 을 자 치 분 권 과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30,000	30,000
100세행복과	노인교실(대학) 운영지원(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3,000	13,000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4,000	24,000
	충남형 온종일돌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960	24,960
사회복지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민간위탁금	48,000	48,000
평생교육과	행복교육지구 운영지원	연구용역비	10,000	10,000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행사운영비	30,000	30,000
문화예술과	지역문화관리	전산개발비	30,000	30,000
	논산사랑지역화폐(자체)	기타보상금	30,000	30,000
사 회 적	논산사랑지역화폐(국비)	기타보상금	55,000	55,000
경제 과	대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41,000	241,00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창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60,000	160,000
- 농업정책과	논산딸기 품질 및 저장성 향상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5,350	35,350
	인삼 경작예정지 안전성 검사비	기타보상금	32,400	32,400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6,000	16,000
축산자원과	새싹보리 육묘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40,000	40,000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 지원	공공운영비	10,000	10,000

부 서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희 망 마 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도비보조)	시설비	90,456	90,456
건 설 과	중교천 전기시설 공사	시설비	70,000	70,000
도시재생과	빈집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79,783	179,783
고기계정과	대교동도시계획도로(소2-15호) 개설공사	시설비	278,442	278,442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운수업계보조금	104,216	104,216
도로교통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활동(보조)	시설비	50,000	50,000
	의원 후생복지	의원상해부담금	36,000	36,000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지원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자체교육)	10,000	10,000
농업기술	지역특성화시범(자원)(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63,900	63,900
센 터	농가형 간편식 상품화(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5,000	35,000

[※] 일반회계 예산현액 10,000천원 이상

□ 문제점

○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에 대해서는 2018회계연도에도 1천만원 이상 사업이 25건에 26억원에 도달하여 개선요구 하였음에도 2019년도의 경우, 위 현황과 같이 행정지원과 외 13개 부서에서는 총 30건에 2,859,507천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전액 불용처리 하였는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각 부서장 및 회계담당자는 수시로 당해 부서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적기 집행되도록 하시고 예산이 소기의 목적달성에 기여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개선

□ 201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율(%)	비고
합 계	1,147,805,685	154,316,122	13.4	
일 반 회 계	989,097,916	122,619,544	12.4	
특별회계	158,707,769	31,696,578	19,9	

□ 문 제 점

-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세출예산 중에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 하여 당해연도 내의 예산집행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9회계연도에 편성된 많은 사업을 지연 발주함으로써 연내에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154,316,122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금은 해마다 반복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 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 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8. 이월액 과다 부서에 대한 해소 대책 미흡

□ 현 황

(단위: 백만원, %)

		ויה וי וי.	전년도	예산	الم خدا 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		다음연도	이월액		Ž	중감 비설	<u></u>
부서별	연도별	예산액 (A)	이월액 (B)	현액 (C=A+B)	지출액 (D)	계 (E=F+ G+H)	명시 (F)	사고 (G)	계속비 (H)	D/C	E/A	E/C
	2017 (I)	687,240	94,776	782,016	615,515	122,035	74,710	13,533	33,792	78.7	17.8	15.6
시전체	2018 (J)	726,552	122,035	848,587	634,572	148,147	102,636	25,612	19,899	74.8	20.4	17.5
	2019 (K)	840,950	148,147	989,097	823,961	122,619	75,581	31,714	15,324	83.3	14.6	12.4
시전체	J/I	105.7	128.8	108.5	103.1	121.4	137.4	189.3	58.9			
증감율	K/J	115.7	121.4	116.6	129.8	82.8	73.6	123.8	77.0			
	2017	90,025	23,146	113,171	75,308	31,124	27,123	4,001		66.5	34.6	27.5
4개 부서	2018	98,068	34,604	132,672	73,514	51,047	38,709	8,617	3,721	55.4	52.1	38.5
7/1	2019	134,526	51,088 (370)	185,984	111,791	65,801	46,106	16,067	3,628	60.1	48.9	35.4
	2017	9,760	1,461	11,221	7,608	2,218	2,216	2		67.8	22.7	19.8
관 광 체육과	2018	13,932	2,218	16,150	8,219	6,583	3,269	1,064	2,250	50.9	47.3	40.8
	2019	19,286	6,583	25,869	15,799	8,889	5,061	701	3,127	61.1	46.1	34.4
	2017	29,403	2,719	32,122	25,548	5,420	4,345	1,075		79.5	18.4	16.9
사회적 경제과	2018	9,586	8,847	18,433	10,764	6,426	3,504	1,451	1,471	58.4	67.0	34.9
	2019	19,498	6,426	25,924	16,136	8,227	5,706	2,020	501	62.2	42.2	31.7
	2017	24,051	3,535	27,586	19,805	7,118	6,016	1,102		71.8	29.6	25.8
도 로 교통과	2018	42,143	7,118 (60)	49,321	33,880	13,888	12,997	891		68.7	33.0	28.2
	2019	55,651	13,929 (80)	69,660	47,889	18,663	14,642	4,021		68.7	33.5	26.8
	2017	26,811	15,431	42,242	22,347	16,368	14,546	1,822		52.9	61.0	38.7
미 래 사업과	2018	32,407	16,361	48,768	20,651	24,150	18,939	5,211		42.3	74.5	49.5
\(\frac{1}{1}\) H≠1.	2019	40,091	24,150 (290)	64,531	31,967	30,022	20,697	9,325		49.5	74.9	46.5

※ ()는 예비비

□ 문제점

- 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시전체 예산액 대비 이월액 현황 (E/A)을 살펴보면 2017년도는 17.8%, 2018년에는 20.4%, 2019년에는 14.6%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고,
-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현황(E/C)을 살펴보면 2017년도 15.6%, 2018년도 17.5%, 2019년도 12.4%가 이월 되고 있음.
- 이월예산의 증감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을 살펴볼 때 2017년도의 경우 78.7%, 2018년도 74.8%, 2019년은 83.3%로서 2018년도는 2017년도에 비해 3.9%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고 2019년도는 2018년에 비해 8.5%의 집행율이 증가하여 이월예산의 감소에 크게 기여함.
- 특히, 이월예산 규모가 큰 4개 부서의 평균 이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 전체 예산액 대비 이월액 현황(E/A)은 2017년도의 경우 34.6%, 2018년도는 52.1%, 2019년은 48.9%로 예산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D/C)은 2017년도 66.5%, 2018년도 55.4%, 2019년도 60.1%를 나타내고 있어 2018년도가 가장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중 가장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는 미래사업과로 예산현액대비지출액 비율(D/C)이 2017년도 52.9%, 2018년도 42.3%, 2019년도 49.5%로 매년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율(E/A)은 2017년도 61.0%, 2018년도 74.5%, 2019년도 74.9%를 이월하고 있어 매년 예산액의 2/3 이상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음.

○ 이처럼 매년 지속적으로 이월액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으로는 장기에 걸쳐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많은데다 규모가 큰 사업이 당해 부서에 편중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 발굴 부서에서 사업 추진까지 병행함에 따른 업무난 가중과 함께,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상황에서 또 다른 규모가 큰 신규 사업을 추진 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이월액 규모가 큰 부서에 대해 정확한 이월 원인을 분석하여 직무 분석 및 업무량 조정, 사업 추진 시기 조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부적정

□ 현 황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지 출 원인 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사 고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계		1,604,000	1,405,458	46,824	58,452	1,498,634	
환경과	운행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사업	220,000	206,458	46,824	13,452	159,634	3회추경 계상 사업기간 부족
평 생 교육과	청소년육성	140,000	0	0	0	140,000	사업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농 업	3농정책 특화사업	576,000	540,000	0	36,000	540,000	3회추경 계상 사업기간 부족
정책과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18,000	9,000	0	9,000	9,000	2019년 홈쇼핑 방송 편성 불기로 이월
	액비순환시스템 지원	150,000	150,000	0	0	150,000	무허가축사 적 법화 진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
축 산	퇴비유통센터 지원	160,000	160,000	0	0	160,000	3회추경 계상 공기부족
자원과	액비화 시설장비 지원	100,000	100,000	0	0	100,000	3회추경 계상 공기부족
	내수면 토산어종 생산시설 현대화	240,000	240,000	0	0	240,000	설계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 위 현황과 같이 사업기간 부족 및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연도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하여 집행 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 연찬 부족으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음은 부당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금후 이월사업 추진 시 관계법령을 철저히 연찬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미개최 지역축제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 각종 축제 추진 현황(2019년)

(단위 : 천원)

축제명	기 간 (예 정)	예산액	집행액	,	」、 ^で	
강경젓갈 축 제	2019.10.16. ~20.	945,000	216,697	 ○ 대도시 강경젓갈 판촉행사 추진 - 일시 : 11. 5.(화) ~ 6.(수) / 11. 16.(토) ~ 11. 17.(일) - 장소 : 2개소(국회도서관 앞, 대전MBC 로컬푸드판매장터 앞) - 소요예산 : 33,460천원 - 참여젓갈상회 : 11개소, 논산특산물 대추 1개소 - 방문인원 : 7,500여명 - 젓갈 판매 실적 : 약 46,500천원 - 성과 : 대도시를 찾아가 강경젓갈 홍보 및 젓갈 현장판매로 상인들에게 경제적 도움 		
연산대추 축 제	2019.10.25. ~27.	80,000	1,896	○ 연산대추 판촉행사 추진 - 일시: 11. 5.(화) ~ 6.(수) /		

※ 미개최 사유 :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 문제점

○ 현황과 같이 축제추진을 위해 사전준비와 홍보 등에 최선을 다했으나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됨에 따라 막대한 재정손실은 물론, 상인들도 판매 수입 급감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에서 대도시 판촉행사를 추진한 바 있으나, 판매 실적이 저조하고 기대효과도 미미한 실정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그동안 실례를 살펴볼 때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축제 개최가 어려울 경우가 더욱 빈번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축제 개최에만 몰두할게 아니라 준비단계에서 미개최 할 경우를 예상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대도시 판촉행사는 물론, 직거래 장터개장, 각 기관과 시민단체 등을 활용한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전개, 신문, 방송, 인터넷망을 활용한 판매홍보, 명절선물 보내기 등 활용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후속조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상인들의 상실감을 해소하는 한편, 관민 혼연일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권고합니다.

11. 예비비사용 지출제한 준수

□ 예비비 사용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비고
계		185,700	1,440	146,376	37,884	
산림공원과	탑정호생태공원 유지 관리	150,000		113,376	36,624	공중화장실 설치
도로교통과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35,700	1,440	33,000	1,260	한파저감 시설 설치

□ 문제점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사안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다음연도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된다'는 예비비의 지출제한을 예규로 명시하고 있음 에도 예비비지출의 내재적 한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비비의 편성 및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편성 및 집행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로 긴급하게 부족예산을 확보한 사업을 기정예산을 집행하듯이 사고이월시키는 사례를 지양하고 관련규정 및 예비비의 지출한계를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1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현 황

(단위 :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		2019	당해연도말	
부서별	종류	별	2018 결산상	2019 결산상	차 액	7015 중감액	현재액	비고
	계		1,324,050	0	△1,324,050	0	0	
	보증금	장기						
	포장묘	단기						
맑 은 물 과	ਮ ਹੀ ਹ	장기	1,324,050	0	△1,324,050	0	0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관금	단기						이중등재로 자료삭제
	잡종금	장기						
	등기타	단기						
	계		881,027	881,027	0	0	881,027	
	보증금	장기	1,037,847	1,037,847	0	0	1,037,847	
		단기	△170,872	△156,820	14,052	0	△156,820	
보건소	보관금	장기	△25,908,830	△25,908,830	0	0	△25,908,830	
	그 현 현	단기	25,922,882	25,908,830	△14,052	0	25,908,830	
	잡종금	장기						
	등기타	단기						
	계		1,072,811	1,057,711	△15,100	△548,500	509,211	
	보증금	장기						
		단기						
연무읍	보관금	장기						
	— с р	단기	1,072,811	1,057,711	△15,100	△548,500	509,211	
	잡종금	장기						
	등기타	단기						

□ 문제점

○ 논산시 재무회계규칙 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등기타 경비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구분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현황과 같이 맑은물과 외 2개소에서는 경비 상호간 구분없이 관리하고 있거나, 2018년도말 현재액과 2019년도 결산서상 현재액이 불일치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전년도말 현재액을 정확한 금액으로 기재하고 경비 상호간 사실에 맞게 정리하는 한편,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13. 공유재산 관리 체계 개선

□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8년말 현 재 액	2019년말 현 재 액	증 감 액	중 감 율
합 계	1,389,999,865	1,950,113,847	560,113,982	40
토 지	477,009,998	952,048,280	475,038,282	100
건 물	260,358,521	305,314,046	44,955,525	17
입 목 죽	9,404,647	9,404,647	0	0
공 작 물	637,368,953	677,328,291	39,959,338	6
기계기구	2,364,732	2,335,569	-29,163	-1
선 박	65,560	65,560	0	0
무체재산	206,390	206,390	0	0
유가증권	1,600,000	1,600,000	0	0
용익물권	775,000	965,000	190,000	25
회 원 권	846,064	846,064	0	0

□ 문 제 점

○ 2019년 말 현재액 공유재산 전체 증감 현황은 2018년 말 현재액 대비 100% 증가율을 보여 그 사유를 소관부서에서 분석한 결과 맑은물과 공기업특별회계 취득재산 12건 중 4건의 취득 가격이 오류 입력되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O 오류 입력 내역

(단위 : 천원, m²)

취득	취 득		당 2	<u>ই</u>	수 정			차 액		
부서	재 산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합 계	4	306,716	440,883,295	4	306,716	298,179	0	0	440,585,116
	대교동 000	1	518	56,884,688	1	518	109,816	0	0	56,774,872
맑은	강경읍 채산리 000	1	281	12,910,124	1	281	45,944	0	0	12,864,180
물과	노성면 교촌리 000	1	2,239	135,354,267	1	2,239	60,453	0	0	135,293,814
	노성면 교촌리 000	1	2,876	235,734,216	1	2,876	81,966	0	0	235,652,250

- 공기업특별회계는 재산 취득 시 자체 지출시스템(아리스)을 사용하고 있으나, 새올 공유재산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재산 취득 후 공유재산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하고 있음.
- 총괄재산관리관은 수기로 입력된 상세내역(취득재산가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승인만 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오류 입력된 재산은 전산 수정 후 반영하여 주시고, 「논산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취득하도록 개선을 바라며, 총괄 재산관리관은 수기 등록 취득 재산(기부채납, 공기업특별회계 등)에 대하여 관련서류(등기부등본, 지출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 후 취득 승인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14.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 현 황

(단위 : m²)

구 분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대부면적	관 리 실 태
합계	4개소		10,726	1,939	
	부적면 감곡리 120-34	임야	2,975	669	대부면적 외 일부면적 무단 점유 중
 시 유	연산면 임리 6-4	답	2,681	_	나대지 방치
	연산면 임리 14-10	답	3,012	_	나대지 방치
	가야곡면 목곡리 206-2	전	2,058	1,270	대부면적 외 일부면적 무단 점유 중

□ 문제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 시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 결과 상기 현황과 같이 무단점유 중이거나 나대지로 방치 중에 있음은 부당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무단점유 중이거나 나대지로 방치 중인 재산에 대해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임대 또는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가치가 증대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5. 정수관리대상 물품 정수관리 철저

□ 현 황

(단위:개)

품 명	정 수	2018 년도말	201	19년도말 수	구 량	비고
T 3	78 T	수 량	취 득	처 분	년도말	P1 -14
무정전전원장치	52	90	16	45	61	
영 상 정 보 디스플레이장치	28	30	7	9	28	

□ 문제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물품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물품현황에 의하면 정수관리 대상 주요 물품 59개 품목 중
 - 무정전전원장치는 2019년도말 보유수량이 정수보다 9개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는 2018년도말 보유수량이 정수보다 2개 초과하여 보유하였거나 보유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정수가 초과된 사유를 분석하고 적정하게 조치하여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에 대한 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 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반영과,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수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16. 논산시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위탁운영) 실시 협약서 개선권고

□ 위탁 현황

○ 2003. 12. 30일 전국 최초로 논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이란 제목으로 지방상수도운영관리 위탁사업이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23개 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 위탁대가(경상가격) / 30년간

(단위: 백만원)

-l -l	경상운	영관리	경상시	설개선	수탁자사업비	위탁대가
기 간	사업비 ①	대가 ②	사업비 ③	대가 ④	1+3	2+4
2004년부터 2034년까지 (30년간)	187,964	214,562	77,718	88,715	265,682	303,277

□ 문제점

○ 위탁대가(시설개선비, 운영관리비) 산출시 초기에는 직전 5년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다 2013년부터 연3%의 물가변동분을 적용하여 위탁대가를 산정하였는데, 실제 물가 상승률은 2013년을 기점으로 1%대로 하락한 현상을 보여주므로 연3%의 적용은 수자원공사에 유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O 할인율(한국수자원공사의 내부수익률)

현재 협약서상 경상적용할인율 연5.25%는 협약종료일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을 도외시한 것이며, 일반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역할에도 맞지 않음.

O 업무감독 및 성과평가

실시협약서에는 논산시의 감사와 관련하여 '업무감독'과 '성과 평가'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대상범위에 대한 갈등이 상존 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위탁기간이 30년으로 위탁대가의 산정이나 할인율 등에 있어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거치고 이를 공론화하여 미래에 져야할 부담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야 함.
- 또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상수도운영 위탁대가로 매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적절한 사용여부에 대한 감사권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개선이 시급함.
- 이를 위해 상수도위탁 자치단체들간의 협력과 주민들의 공론화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법적인 대응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등의 기구를 제도화하여 자치단체와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7. 특별회계 운영 재검토

□ 현 황

(단위 : 천원)

특별회계명	부 서	년 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2017	441,634	300	441,334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특별회계	마을자치 분 권 과	2018	452,389	100	452,289	
		2019	453,783	0	453,78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17	810,460	0	810,460	
생활안정기금	주민생활 지 원 과	2018	828,422	0	828,422	
특 별 회 계		2019	823,855	0	823,855	
논산시일반산업		2017	13,960	0	13,960	
단지조성사업	사 회 적 경 제 과	2018	14,072	0	14,072	
특별회계	0 " 1	2019	14,143	0	14,143	
		2017	151,000	0	151,000	
기반시설부담금 특 별 회 계	도시재생과	2018	151,889	0	151,889	
		2019	152,447	0	152,447	
		2017	27,978	0	27,978	
주택자금융자기금 특 별 회 계	도시재생과	2018	28,671	0	28,671	
		2019	28,792	0	28,792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12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논산시는 공기업특별회계와 13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는 현황과 같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을 확보하였으나 운영한 실적이 없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무관리비 등 일부만 집행하여 운영 실적이 극히 적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특별회계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해주시고,
- 특별회계별 설치 운용의 존속·폐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정을 통한 재검토로 재정비 할 것을 권고합니다.

18. 특별회계 설치 존속기한 명시 필요

□ 현 황

특 별 회 계 명	부 서 명	존속기한 조항	존속기한	비고
의 료 급 여 특 별 회 계	주민생활지원과	조례 제1조의2	2023.12.31.	
국 민 기 초 생 활 수 급 자 생 활 안 정 기 금 특 별 회 계	주민생활지원과	없 음	없 음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환 경 과	조례 제1조의2	2023.12.31.	
농 공 단 지 특 별 회 계	사회적경제과	조례 제2조의2	2023.12.31.	
는 산 시 일 반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특 별 회 계	사회적경제과	조례 제1조의2	2023.12.31.	
기 반 시 설 부 담 금 특 별 회 계	도시재생과	조례 제2조의2	2023.12.31.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대 지 보 상 특 별 회 계	도시재생과	조례 제2조의2	2023.12.31.	
주택자금융자기금 특 별 회 계	도시재생과	없 음	없 음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도시재생과	조례 제3조의2	2023.12.31.	
주 차 장 관 리 특 별 회 계	도로교통과	조례 제1조의2	2023.12.31.	
토 지 관 리 특 별 회 계	민 원 토 지 과	조례 제2조의2	2023.12.31.	
도 시 재 생 특 별 회 계	도시재생과	조례 제2조의2	2023.12.31.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 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는 존속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별회계에 대해 그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존속기한을 재설정 하거나 향후 관련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정비를 권고합니다.

19.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개선

□ 현 황

(단위: 천원, %)

과 목	예산현액 (①)	결 산 액 (실제수납액) (②)	중 감 (2-①)	비 율 (②/①)	비고
계	410,097	677,025	266,928	165	
세 외 수 입	113,000	379,928	266,928	33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7,097	297,097	0	100	

□ 문제점

-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분석해보면 위 현황과 같이 실제 수납액에 비하여 과소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음.
 - ※ 과소편성 사유 : 지적재조사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입과 세출을 예상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비슷하게 편성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과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수입원별로 세입 예산액을 전망하고 계상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합니다.

20. 성과보고서 성과분석 미흡

□ 현 황

(단위 : 개, 백만원)

			성 과	목 표				결 산 액			
구 분	전 략	정책사	업목표	<u>خ</u>	과달성도	Ē	-1 .1 .n	전년도	비교		
	목표수	개 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 성	미달성	결산액	결산액	중감		
합계	12	83	182	28	139	15	838,279	639,842	198,437		

□ 성과초과달성 내역

부 서 명	성과지표명	달성도 (%)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비고
참여예산실	자치법규정비	223	조례발굴 개정 및 조직개편 후속조치 → 개선방안 없음	
열린홍보실	보도자료제공 및 기사화	226	신속정확한 자료제공 및 취재지원	
친절행정국	마을무선방송망 구축	328	마을 무선 방송시설 설치 → 개선방안 없음	
	긴급복지지원사업 활성화	280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 등 → 개선방안 없음	
동고동락국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	272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추진 → 개선방안 없음	
체보드지그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필지수	420	폐천 가능 토지 적극 발굴 → 개선방안 없음	
행복도시국	옥외광고물 정비 증가율	252	불법광고물 정비 및 시트 설치 등 → 개선방안 없음	
사 업 소	도시민 초청 및 농촌체험행사 및 직거래 장터 운영	620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 개선방안 없음	

□ 성과미달성 내역

부 서 명	성과지표명	달성도 (%)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비고
청렴감사실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율 (억원)(%)	66	없음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95	없음	
	노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90	없음	
동고동락국	마을회관 및 경로당 방문 횟수	96	추가사업으로 방문횟수 감소 → 개선방안 없음	
	보훈단체 지원	95	고령으로 사망자 발생 → 개선방안 없음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 (백만원)	94	고령으로 사망자 발생 → 개선방안 없음	
행복도시국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철거	0	없음	
미래발전 사 업 단	논산근대역사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0	없음	

□ 문제점

-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임.
- 2019년도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초과달성 28건 (200%이상 8건), 미달성 15건(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이 없는 지표 8건) 으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대체적으로 미흡하거나 없는 실정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목표치 초과달성(130%) 및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방안을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고 없는 성과지표에 대하 여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개선 권고합니다.

21. 성과보고서의 사업성과 목표 설정 부적정

□ 현 황

시키시대	원 코 코 코 (rl. 0l)	18կ	년도	19է	년도 -	달성
실 과 소 명	성 과 지 표 (단 위)	목표치	실 적	목표치	실 적	성과
세 무 과	과년도 체납세금 정리율(%)	28.0	31.2	28.0	39.8	
희망마을건설과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필지수(건)	5	9	5	21	
도시재생과	옥외광고물 정비 증가율(건)	50,000	148,730	50,000	125,771	초
국 방 협 력 과	충남도, LH 국토연구원, 산업 연구원 등 관련기관 업무회의(회)	10	14	10	17	과 달
보 건 소	감염병 신환자 증가율 억제(건수)	380	381	360	489	성
보 신 소	치매 조기 검진수(건수)	18,500	18,663	14,000	15,429	
공공시설사업소	강경실내수영장 이용자 만족도 (하반기)(%)	65	68	64	86	
	보훈단체지원(백만원)	204	204	296	283	1
주민생활지원과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 (백만원)	2,281	2,281	2,958	2,801	미 달 성
도로교통과	시내버스 교통카드 이용 증가율(%)	1.0	0.2	1.0	0.2	Ö

□ 문제점

○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정책사업별 성과평가의 판단기준이 되는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기준 값이 근거있게 제시되어야 하나,
 - 18년도에 초과달성 지표에 대하여 19년도 목표치를 동일하거나 하향조정되어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없을 정도로 보수적으로 설정 되어 있으며,
 - 18년도에 미달성 지표에 대하여 19년도 목표치를 동일하거나 상향 조정되어 달성자체가 어려운 무리한 목표치를 설정함은 성과의 신뢰성과 적정성이 없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계획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목표치설정은 목표달성의 노력과 성과를 타당하게 평가 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